특허청 공고 제2016-111호

(재공고)발명의 평가기관 지정 신청 공고

「발명진흥법」(이하'법'이라 한다) 제28조(발명의 평가기관 지정 등) 및 동법시행령(이하'영'이라 한다) 제12조(평가기관의 지정) 및 「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」(특허청 고시 제2016-8호, 이하'고시'라 한다.)에 따라 2016년도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6. 7. 1.

특허청장

I. 목 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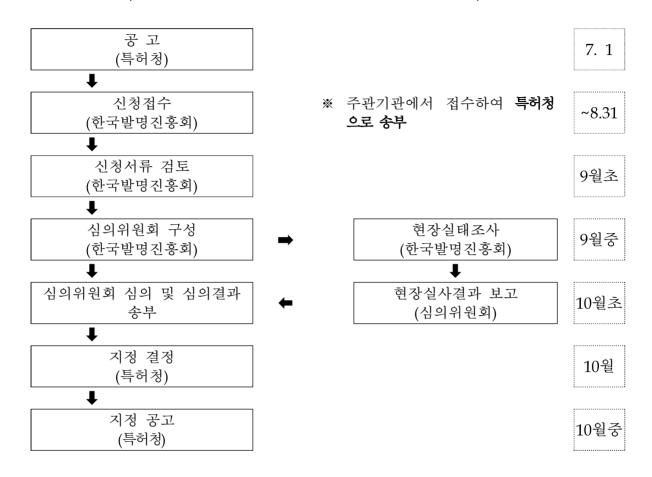
□ 기술평가의 전문인력 및 평가모델 보유 등 등 일정 기준을 갖춘 법인을 발명의 평가기관으로 지정하여, 신뢰성 높은 고품질의 평가서비스 제공 및 기술평가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특허기술의 사업화 촉진에 기여코자 함

Ⅱ. **지정 기준**(법 제28조, 영 제12조)

- □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
 - 1. 다음 각 목의 전문가 모두를 상시 고용할 것
 - 가. 변리사, 회계사, 기술사, 박사학위 소시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기술평가 사업에 종사할 수 있는 3명 이상의 전문가
 - 나. 기술평가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7명 이상의 전문가
 - ※ 가·나 목의 전문가를 모두 포함한 10명 이상
 - 2. 발명의 평가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담 관리조직 보유
 - 3. 발명의 평가 관련 평가기법 보유(평가모델 보유)
 - 4. 발명의 평가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·분석·유통 등을 위한 정보망 구축
 - 5. 시험·성능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평가기관인 경우 적절한 시험장비 보유
 - 6. 평가수수료 산정기준 및 평가 수행 방법 등 평가 수행 시 알아야 할 사항들이 기재된 등 그 밖의 평가수행 관련 인프라 보유

Ⅲ. 지정 방법

□ 지정 절차(법 제28조, 영 제12조, 요령 제 70~74조)



- 1. 신청서류를 접수기한 내에 주관기관(한국발명진흥회)에 제출
- 2. 한국발명진흥회는 3~5명 내외로 평가관련 전문성이 있는 자로 지정 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
 - ※ 현장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지정심의위원회에 보고
- 3. 지정심의위원회는 지정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심의하여 '지정 적격' 또는 '부적격'으로 심의 의견을 송부
 - ※ 필요시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을 청취
- 4. 한국발명진흥회는 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특허청장에 보고
- 5. 특허청은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 공고

Ⅳ. 신청서 접수

- □ 신청서류
 -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신청서
 -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
 -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 72조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
 - 발명의 평가사업 활성화 계획, 업무수행절차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
 - 그 밖에 평가기관 지정에 필요한 서류
- □ 신청방법 : 우편 또는 방문접수 특허청 홈페이지 (www.kipo.go.kr) 또는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(www.kipa.org)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제출
 - ※ 우편 접수 시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, 접수 기간 내에 도착분에 한해 접수함
 - ※ 개인정보보호법('11.9.30 시행)에 따라 신청서 제출시 첨부하는 서류에 "주민 등록번호"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. 고유식별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제출
 - ※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접수를 반려함
- □ 접수기간 : 2016년 7월 1일 ~ 2016년 8월 31일
- □ 접수 및 문의처
 - 접수처 : (우)0613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경영지원실
 - 문의처 :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(042-481-5807)
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경영지원실(02-3459-2932)

Ⅴ. 기 타

- □ 지정의 취소(법 제28조, 영 제12조)
 -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 - 스스로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거나 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
 - 그 밖에 평가기관으로서 능력이 상실되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